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2416

제 안 년월일 : 2025년 3월 6일 제 안 자 : 유 영 위 원 장

1. 수정이유

 개정안이 현재 실무상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실무에 맞게 수정하고, 자료제출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연장 기간의 기산점이 불분명한 점 등을 수정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무 적용 시의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함.

○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문서' 용어를 '의정활동지원시스템'으로 구체화 함(안 제7조 제4항 단서).
- 제출 기간 연장 승인 시의 연장기간 기산일을 구체화 하며, 해당 내용을 안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조항 간 체계를 정비함(안 제7조제4항 단서 후단 삭제).
- 부칙 중 시행일을 2025년 6월 1일로 유예하고 적용례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 단서 중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알리고, 연장 기간은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를 "서면 또는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을 통해 알리고,"로, "협의를 거쳐"를 "협의하여 연장 기간을 10일 이 내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 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 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최초 자료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⑥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와 사무처장은 자료제출 기간 연 장의 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감사 이외의 자 ① ~ ③ (④ 제3항에 된 자료는 부터 10일 출하여야 한 부득이한 사유를 시 서면으로 린 날부터 에 요구된	· 조사기간 료의 수집)	개 정 제7조(감사・ 이외의 자료 ① ~ ③ (현 ④	조사기간 로의 수집) 함과 같음) 이한 경우 체적인 사 해정인 사 한 의원에게 간 만료 3 전자문서 으로 알리 간은 알리 기간은 알린 일 이내의 무료를 요구 협의를 거 이 경우 관 한부서와 사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u>록·보관하(</u> <u><신 설></u> <u><신 설></u>		(5) 제4항에 따라 제출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최 초 자료제출 마감일 다 음날부터 기산한다. (6) 자료제출을 요구받 은 관련 부서와 사무처

		장은 자료제출 기간 연 장의 사유를 기록·보 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u>⑤</u> ~ <u>⑦</u> (현행과 같음)	<u>⑦</u> ~ <u>⑨</u>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u> <u>2025년 6월 1일부터 시</u> <u>행한다.</u>
	제2조(적용례)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자료요구가 접수된 분부터 적용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사무처장 및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자료제출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하여 연장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최초 자료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⑥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와 사무처장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의 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 혅 개 정 아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 료의 수집) ① ~ ③ (생 략) 료의 수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 ----- 다만, 부득이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사무처장 및 자료를 요구한 의 원에게 자료제출 기간 만료 3일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전까지 서면 또는 의정활동지원 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하여 연장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기간 연장 을 승인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최초 자료제출 마감일 다음날부 터 기산한다. <신 설> ⑥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와 사무처장은 자료제출 기 간 연장의 사유를 기록 • 보관하여 야 하다. ⑤ ~ ⑦ (생 략)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